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3. 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3.2. 이필레 의원 외11명
- 나. 회부일자 : 2017.3.2.
-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7.3.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필레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2)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3)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4) 비용의 보조와 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조례안은 2017년3월2일 아필레 의원의 대표발의 및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장애인 관람석을 규정한 현행 법령에 좌석비율에 대한 설치규정은 있으나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통상 대부분의 장애인관람석은 출입구나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공연장의 맨 뒷자리 등에 위치해 있어 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공연장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지정하고, 최적관람석과 출입구·피난 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통

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최적의 좋은 위치에서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문화 및 접근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